

#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748-1
----------	-------

2026. 4. 17.  
복지환경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상위법의 제명 및 용어체계에 맞추어 “경력유지” 등의 용어를 “경력단절 예방” 으로 정비하고, 그 밖의 사항은 제출된 개정안(원안) 대로 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“경력유지” 용어를 “경력단절 예방”으로 변경 및 정비
  - 1) 「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」  
→ 「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」 (조례명)
  - 2) “경력유지” → “경력단절 예방”(안 제1조 ~ 제8조)
-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##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”를 “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촉진 및 경력유지를”을 “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, 제5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“경력유지”란”을 ““경력단절 예방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촉진 및 경력유지를”을 “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촉진 및 경력유지를”을 “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촉진 및 경력유지”를 “촉진과 경력단절 예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촉진 및 경력유지”를 “촉진과 경력단절 예방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촉진 및 경력유지를”을 “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경력유지 등”을 “경력단절 예방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8호 중 “촉진 및 경력유지”를 “촉진과 경력단절 예방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촉진 및 경력유지”를 “촉진과 경력단절 예방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</u>」에 따라 남양주시 <u>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</u>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<u>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</u>를 통한 <u>자아 실현</u>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경력단절여성등</u>”이란 <u>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</u> 중에서 <u>취업을 희망하는 여성</u>을 말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u>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</u>」-----  <u>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</u>를 ----- <u>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.</p> <p>1. “<u>경력보유여성등</u>”이란 <u>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을 말한다.</p> <p>가. <u>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</u> 중에서</p>	<p><u>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촉진과 경력단절 예방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1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가.·나.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2. “경제활동 촉진”이란 <u>남양주시 공공기관·교육기관·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“여성고용업종”이란 「<u>근로기준법</u>」 제11조의 적용 대상 <u>사업 또는 사업장</u>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양주시에 <u>소재한 업종</u>을 말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경력단절여성등의</u></p>	<p><u>취업을 희망하는 여성</u></p> <p>나. <u>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</u></p> <p>다. <u>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</u></p> <p>2. ----- <u>남양주시·공공기관·교육기관·기업 등이 여성의 ----- 지원하기 ----- 제반 -----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이란 「<u>근로기준법</u>」 제11조----- <u>사업 또는 사업장-----</u> <u>----- 소재한 업종-----</u> --.</p> <p>5. “<u>경력유지</u>”란 여성이 <u>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여성의 경제활동 촉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</p> <p>5.</p> <p>3. “<u>경력단절 예방</u>”이란 -----.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촉진</u></p>
--	--	---

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자의 책무) 사용자 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 등) ① 시장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

진 및 경력유지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 
-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 
----- 모성 및 장애  
특성 등을 고려-----  
-----

제4조(사용자의 책무) -----  
----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
및 경력유지 -----  
----- 개선 및 고용안정-----  
-----

제5조(시행계획 등) ① -----  
----- 「여성의 경제활동  
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 
----- 제5조-----  
-----  
----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
및 경력유지에 -----  
시행계획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요  
청받-----  
----- 있는 경우를  
제외하고는 -----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-----  
----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

과 경력단절 예방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4조(사용자의 책무) -----  
----- 촉진  
과 경력단절 예방 -----  
-----  
-----

제5조(시행계획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촉진과 경  
력단절 예방-----  
-----  
-----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-----  
----- 촉진 과



<신 설>

5.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·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업

6.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

7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

<신 설>

제8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5.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 유지 등을 위한 사업

6. -----  
---- 경력보유여성등--  
- 위한 -----

<삭 제>

7. 창업교육 및 상담, 정보제공, 공간대여 등 여성창업 지원사업

8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--  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지원 --  
-----  
인정하는 -----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상황을

5. ----- 경력단절 예방-----

6.(개정안과 같음)

7. (개정안과 같음)

8. -----  
촉진과 경력단절 예방--  
-----  
-----
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--  
----- 촉진  
과 경력단절 예방-----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한  
경우 수탁기관에 그 운영  
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 
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 
공무원에게 그 운영 상황  
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 
검사하게 할 수 있다.